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21
----------	------

2012년 10월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9. 20. 공석호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12. 9. 26.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2. 10. 12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석호 의원)

□ 제안이유

- 서울시는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여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교통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제3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등에 따라 지난 2008년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림선 및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 발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경전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교통불편에 따른 시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계획에 따라 경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통불편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1)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08년 11월 확정·고시된 신림선 및 면목선 등을 비롯한 7개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착공예정 시기를 넘기면서 착공 여부자체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전철 사업의 조속추진을 원하는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교통불편지역 개선 및 서민의 교통복지 증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검토요지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 서울시는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여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 신림선 및 면목선을 비롯한 7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대한 재검토 용역까지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교통불편에 따른 시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고착 상태에 빠진 경전철 사업을 당초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

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 서울시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취약지역 개선과 교통 낙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2007년 11월에 수립하여 08년 11월에 확정하였으나,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사업비와 상업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조의3규정에 따라 5년 단위의 재정비를 위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연구용역은 그간의 경전철 사업의 제반 변화여건을 고려하여 ①계획노선의 지속가능한 사업추진방안 검토 ②각 지역의 추가도입 요구 노선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③기존 지하철 혼잡구간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복층구조 도입 등 타당성 검토 ④수도권 연계철도와 병행 검토를 통한 중장기적 철도망 발전방안 마련 ⑤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임.
- 서울시는 이후 타당성 조사 및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013년 1월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확정요청하고 2013년 12월까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 확정할 예정이며¹⁾ 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계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획입.

- 동 안전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7년 서울시가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신림선을 비롯한 7개 노선의 경전철 건설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우의~신설 경전철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경전철 노선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경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안전과 관련하여 서울시 경전철 건설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은 도시교통본부, 경전철의 설계 및 건설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의 종합적인 민자사업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제1항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는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안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2항2)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재정경제위원회는 동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2) 제3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동 안전에 대하여 건설위원회는 경전철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특별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교통위원회는 경전철 사업 진행 추진 절차 중 도시교통본부와 관련된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 이후의 운영은 교통위원회 소관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련된 계획노선의 건설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021
----------	------

발의년월일 : 2012년 9월 20일
발 의 자 : 공석호 의원 외 12명

1. 주 문

가.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08년 11월 확정·고시된 신림선 및 면목선 등을 비롯한 7개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착공 예정 시기를 넘기면서 착공 여부자체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전철 사업의 조속추진을 원하는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교통불편지역 개선 및 서민의 교통복지 증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여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교통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제3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등에 따라 지난 2008년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림선 및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 발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경전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업시행시기 조정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교통불편에 따른 시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계획에 따라 경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통불편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시는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교통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에 신림선 및 면목선 등의 7개 경전철 사업을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추진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신림선 및 면목선을 비롯한 7개 경전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착공예정 시기를 넘기면서 착공 여부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기존 경전철사업의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시행시기 재조정을 위해 법정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전철 사업의 조속추진을 원하는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7개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낙후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12.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